파주시공고 제2026 - 2957호

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2. 제정이유

「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안건상정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, 심사·검토 및 위촉, 제척·기피·회피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)

다. 분과위원회의 종류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4. 제정규칙안 : 별첨

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의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2월 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소통홍보관 핵심현안TF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소통홍보관실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820-7784 / 팩스 031-940-4139 / 이메일 mcr0724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